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김경 의원 외 15명

나. 의안번호: 제2800호

다. 발의일자: 2025. 5. 26.

라. 회부일자: 2025. 5. 29.

2. 제 안 사 유

- 세계보건기구는 슈퍼 박테리아로 인해 2050년 1,000만 명의 사망자와 누적 100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는 등 폐의약품의 잘못된 처리는 미래 세대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폐기물관리법」 등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사무를 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국한하고 있어 폐의약품 처리의 중요성에 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3년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추진 계획」(기후환경본부)을 수립하고,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우편함을 활용해 폐의약품

수거를 시작한 결과, 2023년 183톤에서 2024년 241톤으로 증가해 협약의 효과성을 입증하기도 함.

- 다만,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정책의 홍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많은 민관 공동협약체 확산과 더불어 서울시가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 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민관협약체 구성 및 홍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제4항).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을 의미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책무는 구청장에게 있으며, 동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구청장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그 관할 구역 내 조정을 하고 있음.

-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 유해 성분이 토양과 수계로 유입되어 수생태계를 교란하고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환경부는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¹⁾하고 폐기 방법을 제도화²⁾하였으나, 여전히 상당량이 생활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음.

서울시 또한 2023년부터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협약’을 체결하는 등 폐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안 제7조제4항은 시장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폐의약품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대비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대응 강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고 조례의 적용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국한됨을 고려할 때 민관협의체 구성원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